

울산지방법원 2023. 9. 26 선고 2022나1701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3. 8. 8.

판 결 선 고 2023. 9. 26.

제1 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 11. 2. 선고 2022가소4062 판결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202,7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664,93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23.부터 2022. 11. 2.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 원고 패소부분 중 유가보조금 반환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다(2022. 11. 21.자 항소취지변경신청서)].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추가하고,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추가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2면 6행부터 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원고는 2015. 7. 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에는 이 사건 화물차 매매계약과 지입계약이 포함되어 있다.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를 매수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차 매매대금을 36개월 동안 월 250만 원씩 할부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위 지입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차를 이용한 운송사업의 경영을 위탁하고 매월 5일 운송료에서 이 사건 화물차의 할부 매매대금, 관리비, 각종 공과금 등을 차감한 나머지 운송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위탁관리료(지입료) 2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6. 16.경 “2015. 7. 1.부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원고와 위·수탁차주 피고와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2016. 6. 16.자로 해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위·수탁계약 해지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2016. 6. 16.경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차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 판결문 3면 11행, 12행1) 의 ”(반환한다면 같은 액수만큼 공제하여야 할 유류비가 증가하게 되는 결과에 이른다”고 보인다)“ 부분을 삭제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받은 유가보조금도 이 사건 화물차의 사용이익이므로 원상회복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취지는 유류세 인상으로 인한 운송사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있으므로, 위·수탁차주와 운송사업자의 관계에서 유가보조금은 실제로 해당 화물차량을 운송사업에 이용하면서 유류비를 부담하는 위·수탁차주에게 지급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차후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어 피고가 부담한 유류비를 사용이익인 운송료에서 공제한다는 사정만으로 유가보조금의 귀속주체가 변동된다거나, 유가보조금을 이 사건 화물차의 사용이익으로 보아 반환해야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유류비, 보험료, 환경개선 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 운송료는 지입차주인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으로, 화물운전사 월 노임만을 운용이익으로 보아 이를 공제한 나머지 운송료를 이 사건 화물차의 사용이익으로 보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계약해제로 인하여 계약당사자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 일방이 목적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의한 이익을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하고(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3267 판결),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매수인이 반환하여야 할 목적물의 사용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사용하여 취득한 순수입에 매수인의 영업수완 등 노력으로 인한 이른바 운용이익이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이러한 운용이익은 사회통념상 매수인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목적물로부터 매도인이 당연히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의 것이 아닌 한 매수인이 반환하여야 할 사용이익의 범위에서 공제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6328, 26335 판결 참조), 화물차 매매계약과 지입계약이 혼합된 이 사건 계약의 특성, 이 사건 화물차를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용이익의 성질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화물차의 사용이익은 2015. 7. 및 2015. 11. 발생한 운송료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중 부담한 비용인 유류비, 보험료, 환경개선 부담금 및 운용이익인 화물운전사 월 노임을 공제한 나머지를 사용이익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받은 유가보조금을 피고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철, 판사 송인철, 판사 오수진

1) 행수 산정에 있어 표 부분은 제외한다.